

사회적 가치실현 향상을 위한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목 차

I. 인권경영 추진개요 .....	1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	3
III.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5
IV.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7
V. 종합평가 의견 .....	13
VI. 향후 계획 .....	14

# 사회적 가치실현 향상을 위한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우리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임

## I 인권경영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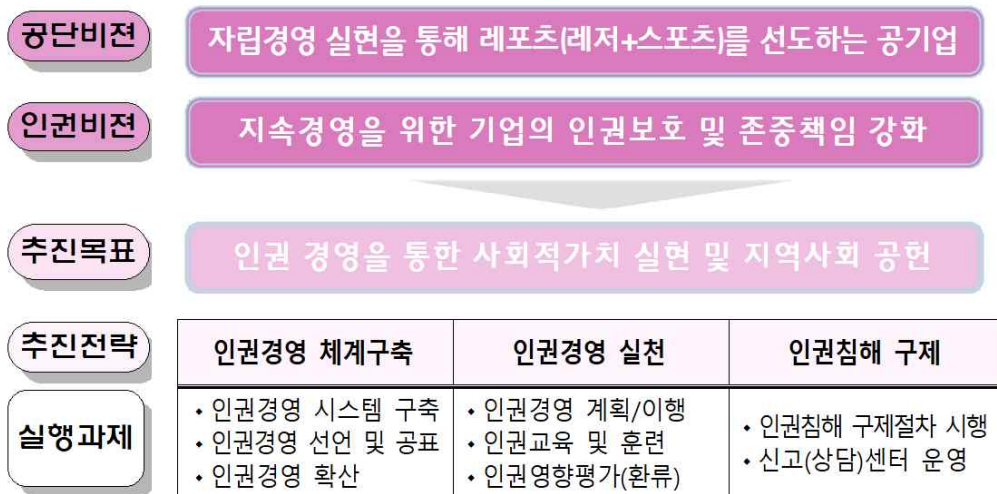
###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8. 8)
- 2021년 인권경영추진계획 [클린평가감사팀-263/2021.3.20.]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감사안전팀-196/2021.11.13.]

### □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 우선 인권책임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8.)
-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침해 보호의무, 인권존중 책임의무,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 등 인권중시 기업문화 확립

### □ 인권경영 추진전략



## □ 인권경영 추진경과

추진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8. 08. 31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8. 10. 08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설명회 참석	
2018. 11. 07	인권경영 체계구축 실행계획 제출(창원시)	
2018. 12. 13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2019. 08. 01	인권경영위원 위촉(총 4명 / 내부 2명, 외부 2명)	
2019. 08. 16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 헌장 및 지침 제정)	
2019. 11. 15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공지 및 공표)	
2021. 01. 31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공지 및 공표)	

## □ 2021년 주요 인권경영 이행실적

추진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1. 03. 20	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2021. 06. 27	인권경영 사내게시판 추가 신설 (인권관련 정보 공유)	인권교육, 콘텐츠, 카드뉴스 등
2021. 07. 14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 헌장 및 지침 제정)	
2021. 07. 25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 부서별 인권지킴이 지정 - 인권 관련 서한문 발송
2021. 07. 29	상호존중의 날 지정 운영	매월 11일 시행 (캠페인, 인권증진 퀴즈 등 시행)
2021. 09.01	인권침해 고충상담 창구 운영	감사안전팀 설치
2021. 08. 26	2021년 인권경영교육 실시	임직원 2시간 이상 (인권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2021. 08. 27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2021. 09. 01	혐오차별 예방교육 실시	
2021. 10. 14	인권영화 관람 및 토론회 개최	창원시설공단과 공동진행
2021. 11. 05	인권 온라인 통합 신고채널(익명) 신설	공단홈페이지 → 열린경영 (구제절차안내, 익명신고 등)
2021. 11. 15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91.6점(1등급)
2021. 12. 6~13	창원레포츠파크 '인권주간' 실시	인권갤러리, 캠페인, 온라인 전시회 등
2021. 12. 17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시 개선사항 이행사항 점검

구 분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	이 행 사 항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지침 및 현장 보완 필요</li> <li>▪ 고용상의 비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강화</li> <li>▪ 협력사에 대한 강제노동의 감시수단 개발 필요 지속적인 노력</li> <li>▪ 인권침해 익명신고 가능</li> <li>▪ 인권경영 전반의 추진업무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현장 및 지침 개정(2021. 7)</li> <li>▪ 인권경영이행서약 및 체크리스트 징구</li> <li>▪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상담창구 개설</li> <li>▪ 통합 신고채널 개편(홈페이지 - 윤리경영)</li> <li>▪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공유,전파</li> </ul>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근로자의 휴게시설 환경 개선</li> <li>▪ 누비자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누비자 터미널 도로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환경정비 완료</li> <li>▪ 창원시의 협의를 통한 터미널 이전 등 근무 환경 개선 완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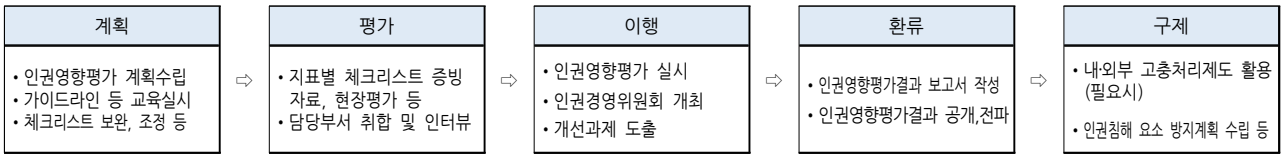
## □ 평가대비 지표회의 및 실무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21. 11. 5(금) 16:00 / 회의실
- 참석자 : 인권경영담당자 및 부서별 인권영향평가 지표담당자
- 회의내용
  - 회의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적정성 검토 및 확정(공단운영, 주요사업)
  - 교육 : 인권영향평가 추진개요·절차, 평가자료 작성방법 등

##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1. 11. 13 ~ 12. 12 (1개월)
- 평가주체 :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심의 평가(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증빙자료 확인)
  - 자체평가(1차)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을 근거하여 자체평가 실시 (현장평가 포함)
  - 최종평가(2차) : 인권경영위원(내·외부) 평가제안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 추진절차



○ 평가부문 : 공단운영 및 주요사업

- 기관운영 평가 : 기관운영 (10개분야 30개항목 144개 지표)
- 주요사업 평가 : 주요사업 (2개분야 9개 항목 40개 지표)

부 문	기 관 운 영	주 요 사 업
평가항목	10개 분야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등	공단운영상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평가
평가내용	기업활동 전반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국가인권위원회 체크리스트 기반 작성)	공단이 추진하는 특정사업 (경륜, 누비자)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정도 충족

○ 평가점수 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등급 체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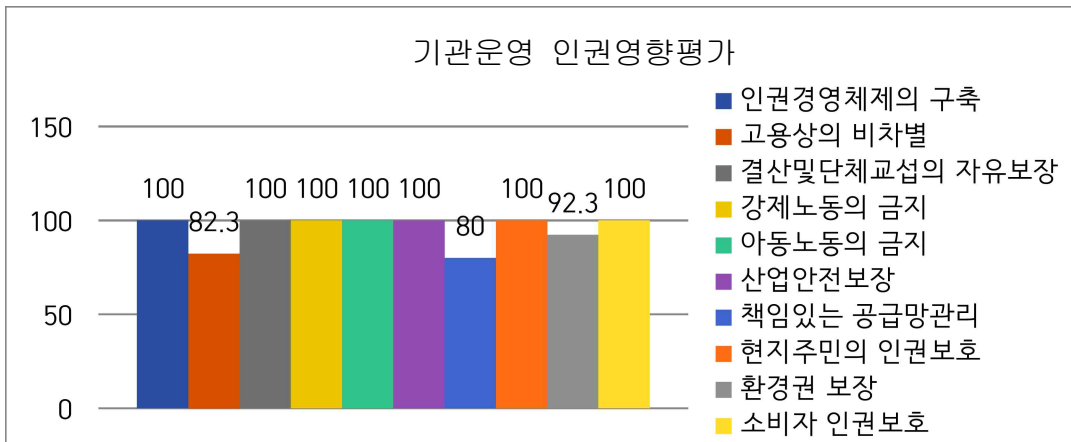
○ 평가위원 구성 : 공단 인권경영위원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구 분		성 명	
내부위원	인권경영위원	홍○○	위원장
	인권경영위원	임○○	당연직 위원
	인권경영위원	김○○	당연직 위원
	인권경영위원	조○○	직원대표
	인권경영위원	박○○	직원대표
	노조대표	정○○	노조사무국장
외부위원	인권경영위원	이○○	인권전문가
	인권경영위원	강○○	협력업체 대표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 91.6점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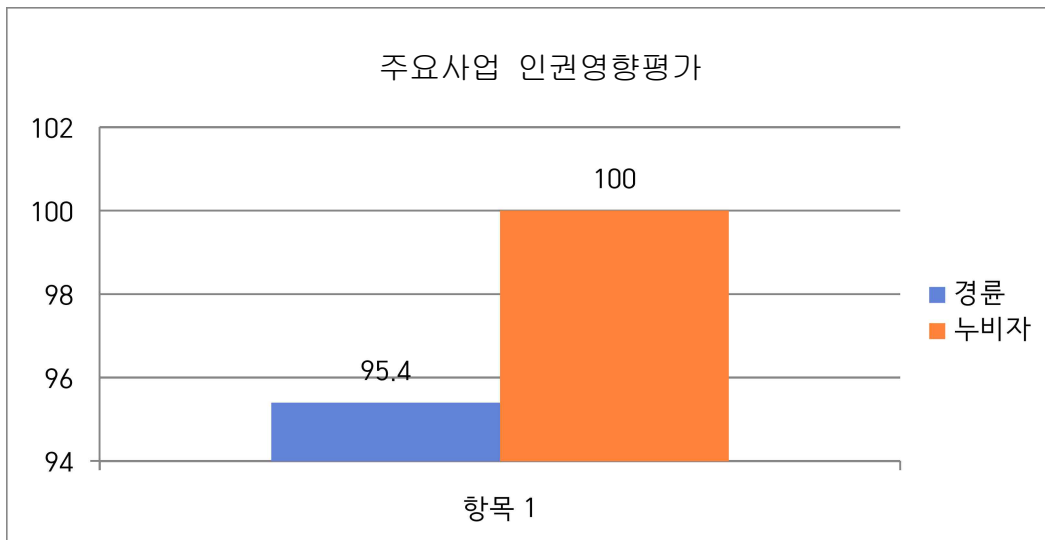
○ 기관운영 : 88.2점 (30항목 144지표)

분 야	항 목	분야점수	지표총괄	항목점수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	25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6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③ 인권경영성과	7
				④ 구제절차 마련	6
2	고용상의 비차별	82.3	17	① 고용상 비차별	5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③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3
				④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4	①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② 노조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5
				③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이행	5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11	① 강제노동 금지	8
				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4	① 연소자 고용금지	6
				② 연소자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8
6	산업안전보장	100	17	① 작업장 안전	5
				② 임산부 및 장애인등 홍보	4
				③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④ 산업재해피해근로자 지원	3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0	10	①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4
				② 모니터링 실시	2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4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10	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②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	3
9	환경권 보장	92.3	13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5
				② 환경정보의 공개	3
				③ 비상계획 수립	5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13	① 고객보호 위한 법령 준수	5
				② 고객 사생활 보호	6
				③ 고객보호 구제절차	2
합 계				88.2	144



○ 주요사업 : 95점 (9항목 40지표)

분 야		항 목	분야점수	지표총괄	항목점수	지표수
1	경 루	① 공정운영	95.4	22	100	3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3
		③ 안전보장			100	7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75	4
2	누비자	① 공정운영	100	18	100	3
		② 안전보장			100	6
		③ 근로자 인권보호			100	5
		④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4
합 계					95	40





□ 기관운영 분야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분석



1. 인권경영체제 구축 : 100점 (4개 항목, 25개 지표)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성과	구제절차마련
100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헌장 및 지침 개정(20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인권경영체제 구축단계에서 제정된 내용의 보안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li> <li>- 정부정책 및 공단 사업특성을 반영한 인권경영 헌장 및 지침 개정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li> <li>- 인권침해 행위신고의 익명신고 신설, 신고인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 보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li> </ul> </li> <li>• 인권리스크 및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토론회 실시하여 내.외부 의견 청취</li> <li>• 부서별 인권담당직원(인권지킴이)을 대.내외적으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li> </ul>			

## 2. 고용상의 비차별 : 82.3점 (4개 항목, 17개 지표)

고용상의 비차별	고요양 남녀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
<p>• 고용과 관련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으로 제도화하여 명확히 하고 있으며, 「취업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차별요소를 근원적인 차단하고 있음</p> <p>↳ 고용상의 비차별에 대한 규정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p>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00점 (4개 항목, 14개 지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100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개 노조가 복수로 적법하게 설립되어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및 분기별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4회, 분기별 실시)를 통한 소통으로 운영이 원활 함</p> <p>• 노조활동은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제도화 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성실히 보장하고 있음</p>		

## 4. 강제노동의 금지 : 100점 (2개 항목, 11개 지표)

강제노동금지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	-
<p>•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취업규정」에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보장하는 근로조건 이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p> <p>• 공정한 근로계약, 초과노동 금지, 신분보장 등 부당한 노동금지 예방을 제도화 하고 있음</p> <p>• 자회사, 협력사의 계약체결시 인권이행서약서 및 인권경영 이행사항 체크사항 징구 등 노력</p>	

### 5. 아동노동의 금지 : 100점 (2개 항목, 14개 지표)

강제노동금지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18세 미만인 자는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채용 시에도 18세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음</li> </ul>	

### 6. 산업안전 보장 : 100점 (4개 항목, 17개 지표)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홍보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12.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제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음</li> <li>•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취업규정」을 살펴보면 법정휴가, 임산부 보호, 출산전후 휴가 등 「모자보건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등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작업에 필요한 각종 보호장비, 안전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복리후생규정시행내규」을 적용하고 있음</li> <li>• 산업안전보장에 관한 지표의 충족사항은 2020년도를 기점으로 준수하게 정비되었음</li> </ul> <p>⇒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참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실시</p>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100점 (3개 항목, 10개 지표)

협력회사 등에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7.5	7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부터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이행서약을 징구하여 협력사 내에서의 인권경영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2021. 11 인권경영이행서약서 내용 보완)</li> <li>• 협력사와 공단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7개 문항 → 공단에서 모니터링 및 개선)</li> <li>• 2021년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고객, 협력사, 용역업체 등) 모니터링 실시</li> </ul> <p>⇒ 협력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를 당사자 간의 토론 및 설득,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협력사 직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p> <p>⇒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않으면 관계의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p>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100점 (2개 항목, 10개 지표)

지역주민 인권존중 보호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부동산 소유권은 장외매장 운영에 따른 건물임대가 해당하여, 신규매장 개설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li> </ul> <p>↳ 공단과 연관성이 있는 현실적인 지표개발 및 도입 필요</p>	

## 9. 환경권 보장 : 92.3점 (3개 항목, 13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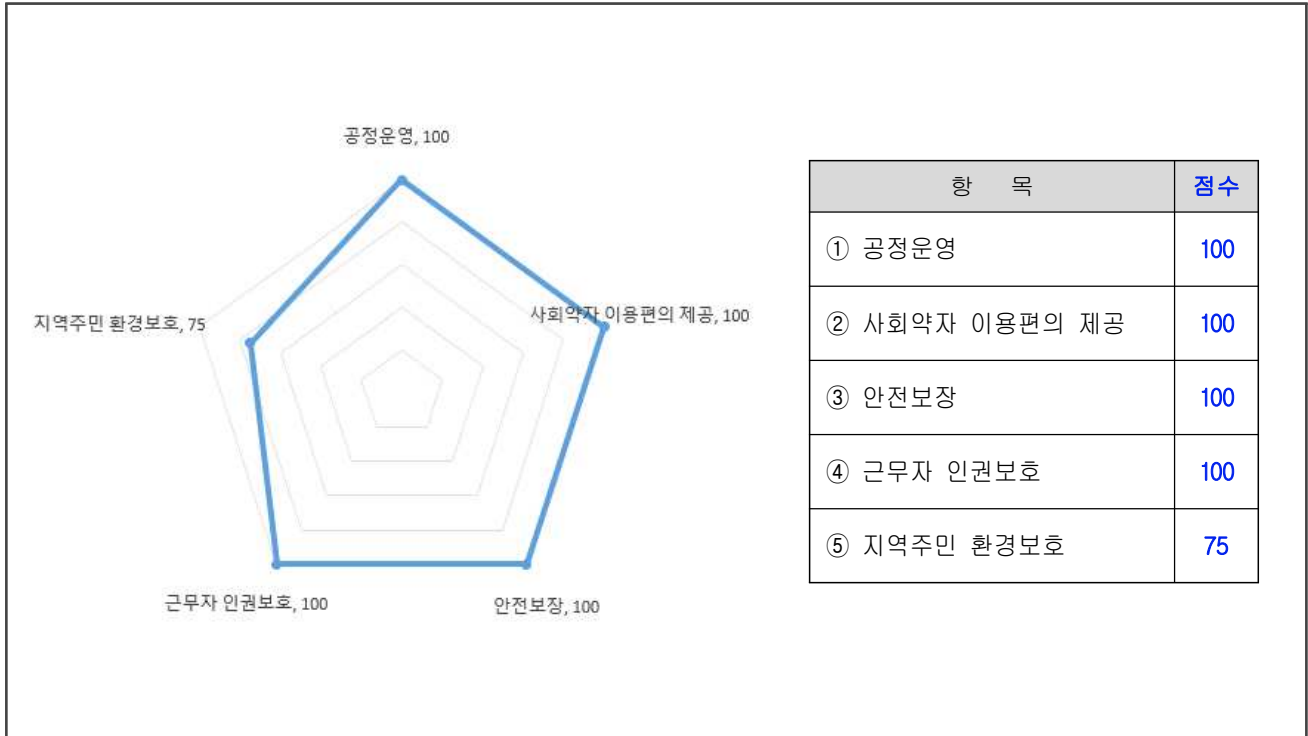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환경정보의 공개	비상계획 수립
100	67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친환경 경영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목표설정에 따른 초과달성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10년 연속 온실가스 목표감축 달성)</li> <li>•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영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후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음</li> <li>•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하여 공지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on-line)에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공유) 하고 있음</li> <li>• 재난안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비상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의무실(의료진) 운영</li> </ul> <p>↳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사업이행시 환경훼손에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p>		

## 10. 소비자 인권보호 : 100점 (3개 항목, 13개 지표)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고객사생활 보호	고객보호 구제절차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소비자(고객, 방문객 등)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출주표, 누비자이용 리프렛, 터미널, 누비자 보관 현황 등) 안내 및 식당·매점 물품납품 시 검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메뉴 등을 공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할인·환불·연기 규정 등 시설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함</li> <li>• 「개인정보보호내규」에 따른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완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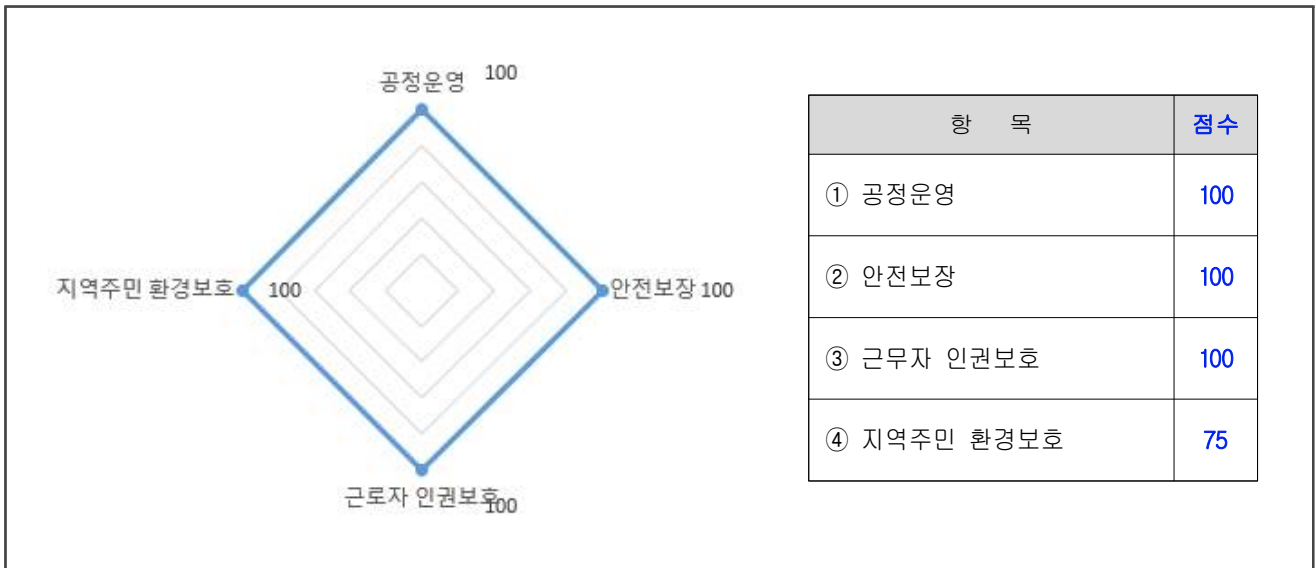
## □ 주요사업 분야 성과결과에 따른 결과분석

### 1. 경륜사업 : 95.4점 (5개 항목, 22개 지표)



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100	10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현장’에는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누구나가 해당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침마련, 내부 규정,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사회약자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주차시설,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대여, 장애인 점자블럭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원 배치, 응급상황대비(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비상약품 구비) 등의 실천을 이행하고 있음</li> <li>• 연간 재난안전관리계획, 비상사태 대비 훈련, 비상상황 안전메뉴얼 구비 등 통해 사고예방을 하고 있고, 시설물(소방, 전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li> <li>• 근로자들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호 장구(심장제세동기, 구급들 것, 비상약품 제공 및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보건업체,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시, 휴게실, 건강증진실등의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음</li> <li>• 인권침해에 대비하여 구제절차가 안내가 있으며, 인권침해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인권 보호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li> <li>• 임신 중 직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초과 근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li> <li>• 「창원레포츠파크 감정도동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구비하여 근무자의 인권보호</li> </ul>				

## 2. 누비자 사업 : 100점 (4개 항목, 18개 지표)



공정운영	안전보장	근로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100	100

- 창원시민 만13세 이상(자전거운전 가능한 사람) 누비자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누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콜센터(상담원) 운영, 자전거 배송정비, 이용자 보험 가입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본보기(선도)가 되고 있음
- 누비자 및 자전거문화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실사, 시민홍보단 간담회 개최, 고객게시판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고객 불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권리제한을 개선하고 있음
- 누비자 안내 리플릿, 카카오톡 채널, 터미널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환불·연기 규정 등 시설 이용과 사고시 창원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관련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함
- 누비자종사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근골격 질환 상담 및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및 현장실사 등을 정기적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노력함
- 「창원레포츠파크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언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

## 총 평

- ▶ 2021년 인권영향평가 3년차를 맞아 공단의 사업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인권리스크 파악 및 개선을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이행하는 등 내재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됨
-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점수는 총점기준 전년대비 7.5점 상승하여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이는 기관의 인권경영을 위한 체제의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됨
- ▶ 매년 평가지표를 공단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 발굴 및 사전예방을 통해 인권리스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우수의견

- 인권경영 현장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권리스크 및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토론회 실시하여 대내외 의견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를 시도함
- 공단 자체적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인권지킴이 선정, 상호존중의 날 운영, 인권주간 운영 등 인권경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음
- 인권침해 고충상담실 신설, 홈페이지 통합신고채널을 개편 등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의 개선 노력도가 높게 판단됨

## □ 미흡·개선 의견

-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부문중 협력사의 인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협력)업체 직원들의 내부교육(산업 안전보건, 갑질예방, 4대폭력예방 교육 등)에 참여 확대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체크리스트중 ‘정보없음/해당없음’에 해당되는 지표수정 및 개발이 필요하고 공단과 연관성이 있는 현실적인 지표 도입 검토

###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전과정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인권경영 민간 확산)
  - (내부공개) 평가결과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 공개
  - (외부공개) 홈페이지 게시, 타 공공기관 공유 등을 통한 외부 공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보완,미흡)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방지조치 이행
  - 인권침해 요소 등 관련 부서별 개선 요청 및 점검
  - 차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인권영향평가 대비)

- 붙임 1.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1부